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58호 2024. 7. 30.(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5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상위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삽입(안 제10조2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5,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상위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삽입 (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⑪ (생략)</p>	<p>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 -----.</p> <p>② ~ ⑪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5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도서관 내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변경하고,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며, 대출도서권수를 늘려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이용시간)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변경(6시→9시)
- 제3조(휴관일)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에 대한 휴관 명시
- 제10조(관외대출) 용어 현행화(순회문고→단체대출), 이동도서관 삭제,

대출도서권수 확대(5권→10권)

- 제12조(관외대출 기간) 용어 현행화(순회문고→단체대출)
-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무단복제 금지 자료 근거 법령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5,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도서관 내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변경하고,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며, 대출도서권수를 늘려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이용시간)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변경(6시→9시)
- 제3조(휴관일)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에 대한 휴관 명시
- 제10조(관외대출) 용어 현행화(순회문고→단체대출), 이동도서관 삭제, 대출도서권수 확대(5권→10권)
- 제12조(관외대출 기간) 용어 현행화(순회문고→단체대출)
-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무단복제 금지 자료 근거 법령 확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06:00”을 “09:00”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에 의한”을 “제2조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함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을 “단체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권”을 “10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순회문고”를 “단체대출”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저작권법상”을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한다.
- 2. (생략)

제12조(관외대출 기간) ①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순회문고 : 1년 이내

② (생략)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2. (생략)
-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생략)

-----.

- 1. ---- 10권 -----.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외대출 기간) ①-----
-----.

- 1. (현행과 같음)
- 2. 단체대출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

-----.

- 1.·2. (현행과 같음)
-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

4.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5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
 - 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5,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
 - 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독서 진흥)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5조(독서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도서관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관계 법령 발췌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